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4권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목 차

제1장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제2장 해외농업개발 현황	5
제1절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현황	5
1. 해외농업개발 추진 배경	5
2.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변천	7
3. 해외농업융자사업 현황	7
4. 그간의 해외농업개발 성과	12
제2절 해외농업개발의 해외사례	13
1. 일본 젠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	13
2. 중국 등 해외사례 평가 및 국제사회의 동향	16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7
1. 부족한 해외농업 진출 기업과 투자규모	17
2. 해외농업개발의 지역별·분야별 편중	17
3. 해외농업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18
4.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실적 저조	18
5.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흡	19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향후 개선방안	21
제1절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와 지역별 진출 전략의 차별화	21
1. 중점 진출 지역을 통한 진출지역의 다변화	21
2. 권역별 진출 전략	22
3. 단계별 진출전략	23

제2절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 방안	24
1.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4
2.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유도와 품질 향상 지원	24
3.	비상시 해외곡물 국내 반입 관련 매뉴얼 마련	25
4.	평상시 해외곡물 국내반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25
제3절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26
1.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26
2.	전문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27
3.	민·관 협력 진출	28
제4절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의 내실화	30
1.	해외농업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30
2.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31
제5절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32
1.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원 확대	32
2.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33
제5장	결 론	34
참고자료1		36
참고자료2		51
참고자료3		52

표 목차

【표 1】 연도별 주요곡물(밀, 옥수수, 콩) 가격 변화 추이	5
【표 2】 우리나라의 주요곡물 수입현황(2009~2011 3개년 평균)	6
【표 3】 해외농업개발용자 사업 지원 근거 법률	8
【표 4】 해외농업개발 용자사업 지원현황(2009~2011)	11
【표 5】 해외농업개발 용자사업으로 확보한 곡물량, 반입량	12
【표 6】 해외농업 진출 기업 수와 개발면적(2008-2011)	13
【표 7】 일본 젠노의 사료곡물사업 흐름도	14
【표 8】 해외농업 국가별 실적(2011년)	17
【표 9】 거점국가 별 수출항 분포	21
【표 10】 권역별 중점국가	22
【표 11】 권역별 진출 전략	22
【표 12】 단계별 진출계획	23
【표 13】 KOPIA 설치국 및 주요사업 현황	29
【표 14】 주요 성과	29
【표 15】 기관별 해외농업개발과 관련·유사 사업	3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이 2010년 7월과 2012년 7월 다시금 급등하는 등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자급률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10년에는 26.7%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쌀 이외의 작물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2001~2010년간 연평균 99.9%의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은 2010년 기준 0.8%, 0.8%, 8.7%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처럼 국제곡물의 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한 상황에서 낮은 식량자급률은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불안요인 될 수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일상화, 화석연료고갈로 인한 곡물연료 소비의 증가, 산업화에 따른 농지 감소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상시적인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곡물 수입선¹⁾이 편중되어 있어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곡물생산량 증대에 의한 자급률 제고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불안정한 국제곡물수급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는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미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며, 4대 곡물 메이저 의존도도 50% 이상임.

제2장 해외농업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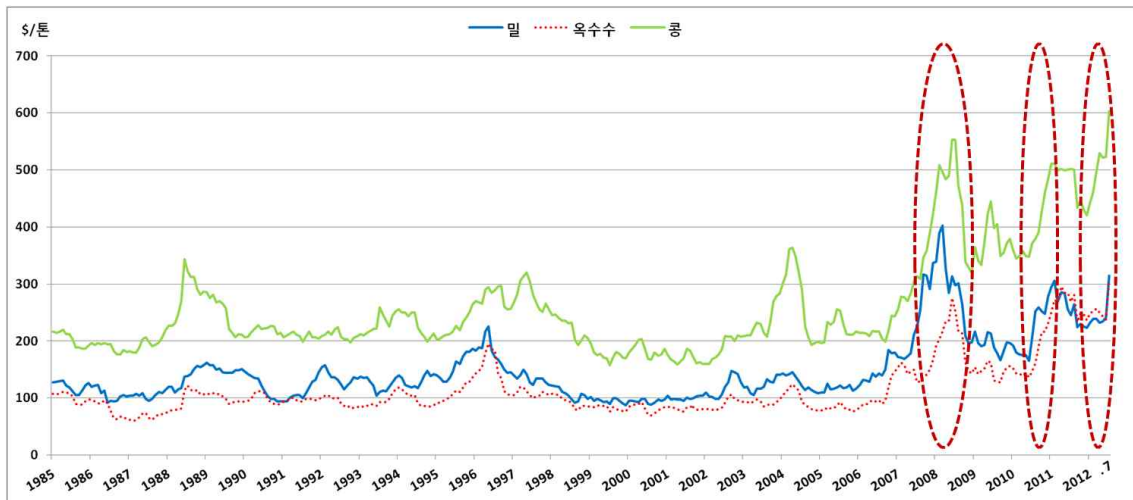
제1절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현황

1. 해외농업개발 추진 배경

세계인구 증가 및 신흥국 경제성장, 기상이변의 일상화, 투기자본의 개입 등으로 장기적으로 상시적인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을 전망하여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²⁾을 마련하였다.

2008년 세계식량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이 2010년 7월과 2012년 7월 이후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2013년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수급 불안 심화가 우려되어 곡물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주요곡물(밀, 옥수수, 콩) 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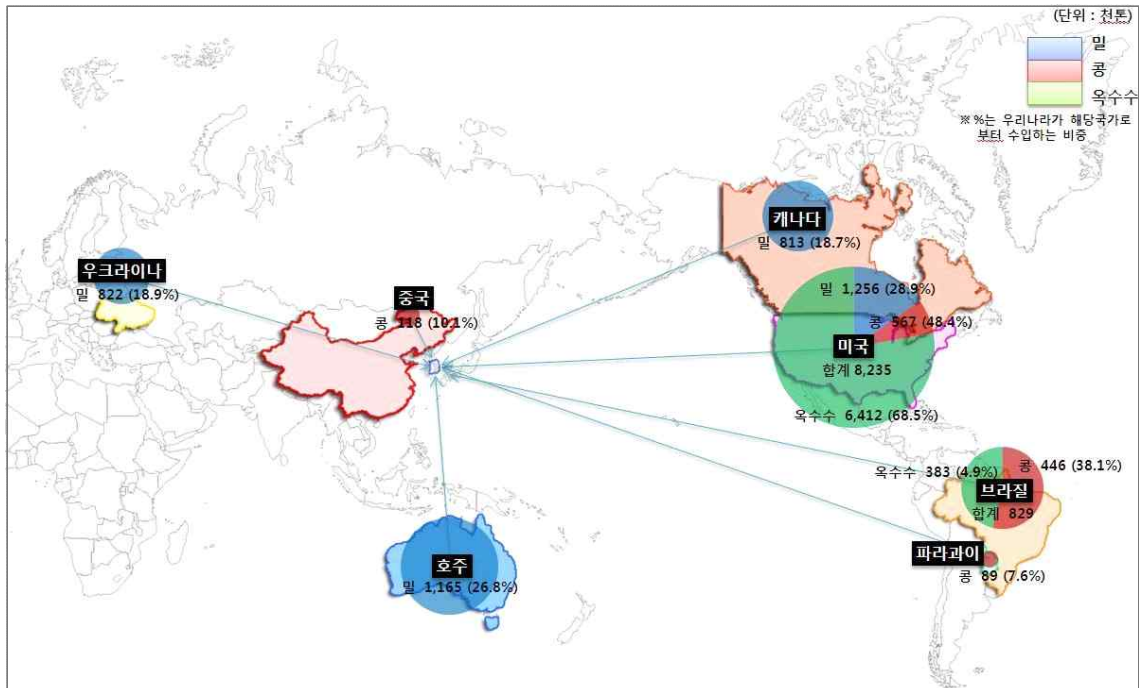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곡물 수입 의존도³⁾가 매우 높고, 일부국가 및 곡물 메이저 의존

2) 2009년 마련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 추진 3년차를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근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마련하였음.

3) 2011년도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은 세계 6위이며, 옥수수의 경우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임.

도도 높아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곡물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 메이저의 의존도 또한 50% 이상으로 수입선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곡물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주요곡물 수입현황(2009~2011 3개년 평균)
- 곡물별 5% 이상 수입국가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민간주도로 해외농업(농장)을 개발하고, 정부는 전략수립, 기술·정보·교육·외교·금융지원 등 측면지원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연간 수입량의 약 10% 수준의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며,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 시 해외농업개발에서 생산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첫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농장형 사업),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유통형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과 둘째,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컨설팅, 기반구축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2.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변천(연혁)

60~70년대	‘정부주도’로 해외이주법 제정(1962년 3월), 남미 농장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부적합지 선정, 영농의지 부족 등으로 실패
80년대 이후	‘민간기업 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에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규모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철수. 다만, 일부 기업 ⁴⁾ 의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 중
現 정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 추진 중

3. 해외농업용자사업 현황

(1) 사업의 목적

우리나라는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수입국으로서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 축산·원예·종자·농자재 등 농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① 사업내용(용자사업)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농장형),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유통형)의 용자사업

② 사업규모

20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수준의 해외 공급망 확보

③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용자)

4) 풀무원(2003, 중국, 유기농 콩 계약재배), 남양 알로에(2002, 연해주, 약용작물 계약재배 등)

【표 3】 해외농업개발용자 사업 지원 근거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7.25>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전문개정 2008.12.2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 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1.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3.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지원방식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융자사업은 금리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상환기간이 개선되었으며 별도의 상한금액은 없음.

⑤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예 산	102,000	21,000	21,000	30,000	30,000
집 행	67,192	21,000	21,000	25,192	집행중

(3)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과 절차

1)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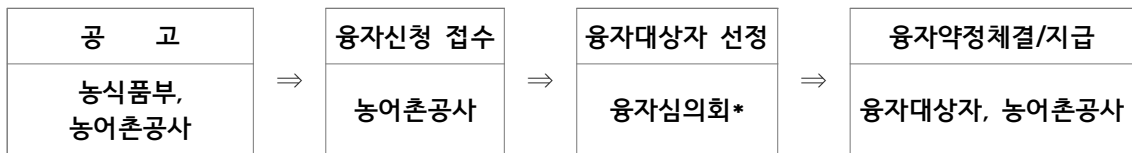
- ①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자(해외농업개발사업자)
- ②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③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④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⑤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용자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⑥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개발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곡물 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2) 선정기준

- ① 밀·옥수수·콩 등 식량·사료 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②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 사업 우선 지원
- ③ 곡물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④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원조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국외 여행 등에 불안요소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⑤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선정절차



(4) 지원업체 및 지원현황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농업용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23개 기업이 9개국에 진출하였고, 이들 기업에 대해 총 665억 3,500만원이 용자되었다.

【표 4】 해외농업개발 용자사업 지원현황(2009~2011)

유 형	대상국가	기업명	대상작물	지원금액	지원년도
	9개국	23개 기업		66,535	
농장형	8개국	18개 기업		37,309	
	러시아 (연해주)	N기업	콩, 기타	1,426	2009
		B기업	콩, 기타	95	2009
		S1기업	콩, 옥수수, 귀리	10,930	2009, 2010
		A1기업	밀, 콩	5,009	2009
		K1기업	콩, 옥수수	376	2010
	브라질	D1기업	콩, 기타	476	2009
		J1기업	콩	2,571	2010
	캄보디아	A2기업	옥수수	333	2011
		H1기업	콩, 옥수수	838	2009
		M기업	카사바	6,430	2010, 2011
		S2기업	카사바	600	2010
		J2기업	옥수수	316	2011
		D2기업	카사바	2,700	2011
	인도네시아	S3기업	옥수수, 카사바	3,000	2010
	필리핀	K3기업	옥수수	380	2010
	몽 골	A3기업	밀, 콩	500	2011
라오스	E기업	콩, 옥수수	1,083	2009	
뉴질랜드	S4기업	옥수수	246	2010	
유통형	6개국	6개 기업		29,226	
	러시아	C1기업	밀	6,800	2010, 2011
	미 국	H2기업	옥수수, 콩	9,500	2011
	캄보디아	K1기업	옥수수, 카사바	4,326	2009~2011
	필리핀	H1기업	옥수수	3,000	2011
	라오스	K2	옥수수	2,900	2009
	인도네시아	P기업	옥수수	2,700	2009

【표 5】해외농업개발 용자사업으로 확보한 곡물량, 반입량

(단위 : 톤)

국가	대상작물	확보량	반입량
계		138,322	604
러시아	콩, 밀, 옥수수	18,202	190
브라질	콩	7,034	-
캄보디아	콩, 옥수수, 카사바	71,232	360
인도네시아	옥수수, 카사바	31,927	-
필리핀	옥수수	9,564	-
몽골	밀, 콩	200	54
라오스	옥수수	163	-

【표 4】를 보면, 23개 기업이 재배하여 확보된 곡물의 양은 옥수수, 콩, 카사바⁵⁾ 등을 합쳐 모두 138,322톤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것은 겨우 604톤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체 물량 대비 0.4% 수준으로 확보된 곡물의 대다수는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현지판매 되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 7월 14일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 2012년 1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명령 등에 관한 법적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4. 그간의 해외농업개발 성과

(1) 진출기업 수와 개발면적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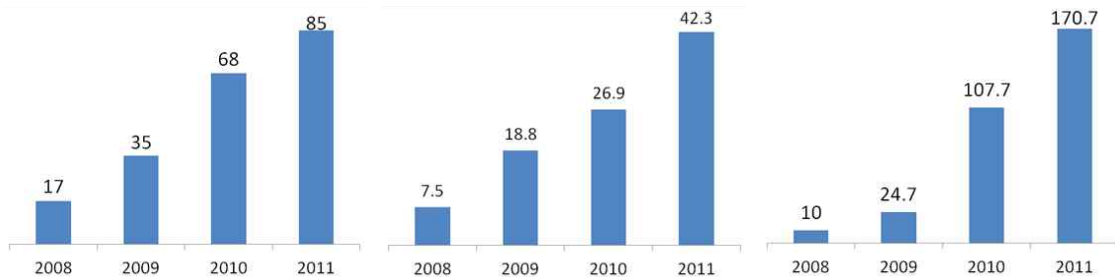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해외진출 기업의 수가 17개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기준 20개국에 85개 기업이 진출하였고, 총 42천ha를 개발하여 17.1만톤을 생산·수집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해외농

5) 열대·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작물로 고구마처럼 덩이뿌리가 달린다. 덩이뿌리에서 식용전분(타피오카)을 채취하여 빵, 면류, 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덩이뿌리를 얇게 썰어 감자칩처럼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

업 진출 기업의 수와 개발면적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해외농업 진출 기업 수와 개발면적(2008-2011)



(2)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2011년 6월)와 한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2008년 7월)에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1년 7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2012년 1월 시행)하였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 이후 기업의 용자 상환기간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하였고, 그동안 은행에서 담당해 오던 부동산 담보 관련 업무를 한국농어촌 공사가 담당함으로써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11.3%에서 0.48% 수준으로 감소⁶⁾시켰다.

(3)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전략 추진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토지정보 제공 등 제도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민간은 생산·유통 등의 사업에 집중하게 하여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과 ODA지원을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의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국 정부와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여 win-win효과를 추구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관련정보의 공유(www/oads.or.kr),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

6)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 상환기간 2012년부터 새롭게 용자 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부동산 담보에 관한 수수료 경감은 2012년부터 농어촌공사로 기관을 이전한 것이므로, 향후 모든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2절 해외농업개발의 해외사례

1. 일본 젠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외농업 진출 사례⁷⁾

(1) 젠노의 국제곡물유통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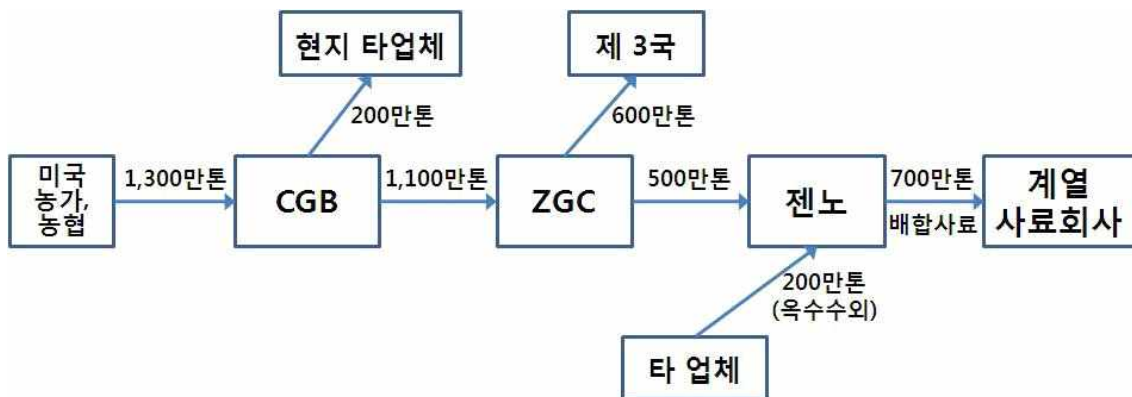
현재 일본의 경우 미국에 곡물 수출엘리베이터와 산지엘리베이터를 확보하여, 사료 곡물을 일본 내 28개 사료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중반에 뉴올리언즈에 진출하여 사료용 옥수수 구매사업을 추진하였고, 1979년 수출전문회사인 ZGC(Zen-Noh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으나 진출 초기에 토지확보문제, 주민동의 및 인허가문제와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대 중반 농업 불황에 따른 산지 조달경로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1988년 ZGC가 이토추와 공동으로 산지 엘리베이터와 바지선을 운용하는 CGB(Consolidated Grain&Barge)을 인수하였다. 이렇듯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산지엘리베이터와 강변엘리베이터가 30개에서 60개로 증가하였다.

현재 일본은 연간 취급량은 수출엘리베이터를 통한 100만톤⁸⁾과, 산지엘리베이터를 통한 1,200만톤⁹⁾이다.

【표 7】 일본 젠노의 사료곡물사업 흐름도



7) 출처 : 일본 젠노의 국제곡물유통사업 발전과 시사점, 2012, GS&J 인스티튜트.

8) 수출엘리베이터 저장 규모는 10만톤으로 연간 회전율이 평균 110회에 달함.

9) 산지엘리베이터 저장 규모는 220만톤으로 연간 회전율은 평균 5회임.

또한 젠노 계열 내 상시 확보량은 400만톤 이상으로 그 중, 290만톤¹⁰⁾은 저장시설을 통해, 110만톤¹¹⁾은 운송선박을 통해 확보된다.

젠노의 연간 수익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출 60억 달러, 세후 순이익이 5,500만달러에 달한다¹²⁾.

(2) 젠노의 성공요인

젠노의 성공요인은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한 실수요자로서 미국 산지로부터 일본 내 사료회사까지 완전 계열화하여 안정성과 신축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국내에 28개의 사료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CGB를 인수함에 따라 충분한 산지 수집능력과 400만톤의 물량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방대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황에 따라 타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수익성의 보충도 가능하다.

곡물메이저 등 경쟁업체의 견제가 심하였던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도 젠노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CEO와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충당하는 방식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초기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젠노의 시사점

젠노의 성공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단계적 확장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젠노의 경우 유통단계 사업에서 생산단계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사실 국제곡물공급 부족과 가격의 이상 급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해외 직접생산은 리스크가 크고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반입이 곤란하고, 제3국으로의 판매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해외농장개발 사업과 유통망 확보사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통의 병목부분에 우선 진출하고, 투자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참여, 시설이용 및 사업제휴 등을 활용해야 한다.

10) 60개 산지엘리베이터 220톤, 수출엘리베이터 10만톤, 일본 국내 수입항 사이로 60만톤.

11) 미미시피 수계 바지선 60만톤, 태평양 운송선 50만톤.

12) 2010년 기준 총 자산은 629백만달러이며, 설립 후 10년이 지난 1990년에 첫 배당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저한 준비 후 최단기간에 목표 취급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2. 중국 등 해외사례 평가 및 국제사회의 동향

(1) 각국의 해외농업투자 확대 추세

일본, 중국, 중동 등 곡물수입국의 식량안보 노력과 유럽 투자기관의 바이오연료 확보 등을 위한 해외농업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과 중국은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외 곡물확보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젠노와 종합상사 등 민간주도로 추진되었고, 중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방공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1년 농업의 밖으로 나가기를 국가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또한 중동국가들은 수단, 파키스탄 등 지리적 인접국가에 해외농업 개발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제3세계 국가에서 대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2) 해외농업투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최근 대규모 해외농업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해외농업투자로 인한 개도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공동체의 해체,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도 해외농업개발 투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의 기본원칙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¹³⁾. 이러한 논의결과는 향후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크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농업 투자에 관한 국제 규범의 틀을 존중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FAO 식량안보위원회는 2012년 5월, '토지·수산·산림자원 소유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하였고, World Bank, FAO, IFAD, UNCTAD는 공동으로 농업투자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논의중이며, FAO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2013년 말까지 기본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부족한 해외농업 진출 기업과 투자규모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수와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투자 규모가 선진국의 유사 기업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자지원기업의 평균 개발면적이 2009년 539ha, 2010년 750ha, 2011년 1,050ha로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해외농업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실적도 아직은 없는 실정이며, 국가별 해외농업개발 경쟁이 심화되어 우량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 해외농업개발의 지역별·분야별 편중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이 동남아·연해주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 진출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표 8】 해외농업 국가별 실적(2011년)

지 역 별	'11년 실적	
	면적(ha)	확보량(톤)
합 계	42,315	170,729
러시아	25,247	39,826
캄보디아	6,815	71,432
인도네시아	3,253	32,032
몽골	2,798	3,570
필리핀	2,066	9,929
기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키르기스스탄 등)	2,136	13,940

위 【표 8】을 살펴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외농업개발 면적은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세 곳이 총 해외농업개발 면적의 84%를 차지한다.

해외농업개발의 분야별 지원에 있어서도 곡물 위주의 지원을 해줌에 따라 농산업의 외연확장이 부족하고, 식품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여 해외농업개발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 해외농업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해외농업개발에 특화된 대규모 영농, 유통, 농기계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 또한 부족하여 해외농업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별·지역별 농업투자정보를 인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농업투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 시스템(www.oads.or.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전담조직이나 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4.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실적 저조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농작물을 적시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9년 해외농업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한 지 3년이 조금 지난 현 단계에서 벌써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고, 또한 단기간에 곡물메이저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해외확보 농산물의 국내 반입량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수준이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비상시 국내반입과 평상시 반입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 비상시 국내반입 문제

현행법 상 정부는 비상 시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용자를 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해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진출한 국가에서 자국의

식량 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2007~2008년과 2010~2011년 세계 각지에서 취해진 것과 같은 곡물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할 경우, 자국에 진출하여 농업생산 및 농산물 유통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예외를 인정해주고, 곡물수출을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보장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진출하여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의 경우 최근 곡물수출규제조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게다가 식량자원 내셔널리즘, 식량 무기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비상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비상 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

(2) 평상시 국내반입 문제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농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평상 시 반입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행법상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산물에 대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비상시에만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국내 반입을 하지 않고 수익성 등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현지판매, 제3국 수출 등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 장 【표 0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실시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은 2011년까지 모두 138,322톤인데, 이 가운데 국내로 반입된 것은 전체의 0.4%인 604톤에 불과하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고, 확보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있어, 산지엘리베이터 확보 문제와 유통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너무 적은 수치이다. 이렇듯 국내반입이 적은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해 융자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곡물이 평상시에는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만 맡겨져 국내 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5.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흡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원화된 기관이 없으며,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는 몇몇 기관 역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갖추

어져 있지 않아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보 공유 및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각각 별개의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며, 대부분의 경우 정책 및 사업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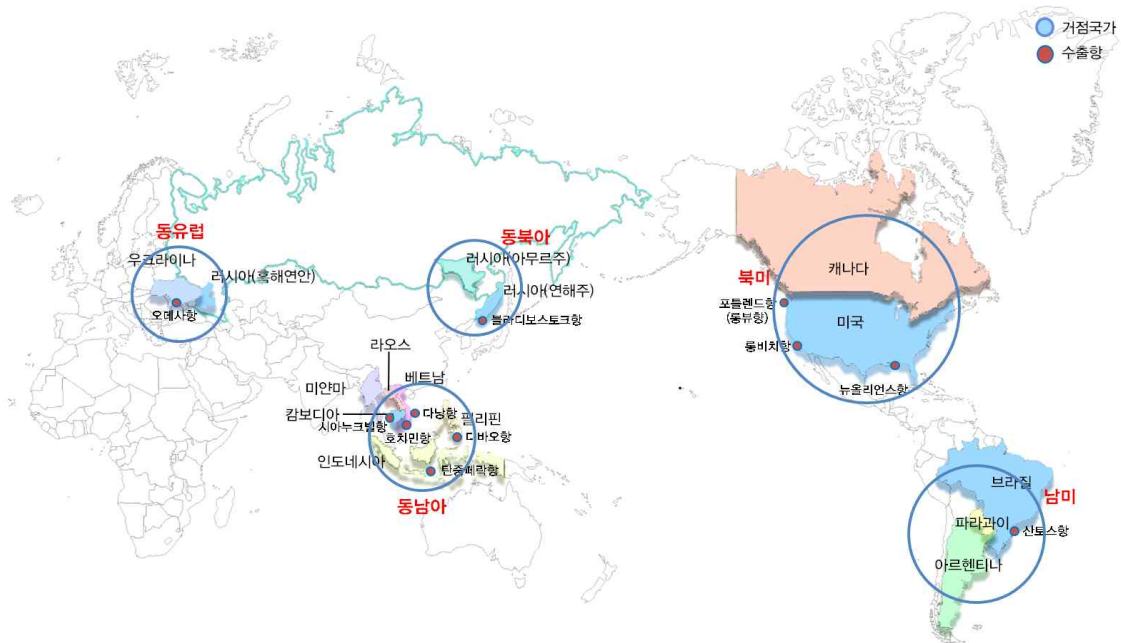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향후 개선방안

제1절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와 지역별 진출 전략의 차별화

1. 중점 진출 지역을 통한 진출지역의 다변화

현재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집중된 진출지역을 확대하고, 곡물수급 위기 대처 능력제고 차원에서 5개 권역의 14개국을 중점 진출지역으로 선정하여 진출 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중점진출지역은 생산·수출잠재력, 투자여건,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고, 또한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 따라서 수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수출항을 위주로 거점국가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표 9】【표 10】 참조

【표 9】거점국가 별 수출항 분포



【표 10】권역별 중점국가

권역	중점국가
동북아	러시아(연해주, 아무르주)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유럽	러시아(흑해연안), 우크라이나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북미	미국, 캐나다

2. 권역별 진출 전략

아래 【표 11】에서와 같이 지역별 장·단점 등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작목이나, 유통방법 등 각각의 지역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시장 진입을 시도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표 11】권역별 진출 전략

	지역별 특성	진출 전략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 : 광활한 농지자원, 러시아 정부의 높은 개발의지 단점 : 유통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작목 : 옥수수, 콩 대규모 농장개발 우선진출 하면서, 축산·식품산업, 유통 등 연계 유통망 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 : 투자에 우호적, 기상여건이 농업에 유리, 지리적 인접성 단점 : 물류인프라 부족, 대규모 농지 확보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작목 : 카사바, 옥수수 소규모 농장개발 우선 진출하여 경험 축적, 현지기업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 유통사업은 증장기적 진출
동유럽 러시아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 : 거대한 농지, 비옥한 흑토 지역으로 농업여건 유리 단점 : 유통인프라 부족, 수출제한 조치 및 정치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작목 : 밀 식용 밀 확보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분업체 등 실수요기업 및 저장·유통분야 진출 확대 곡물 수출제한조치 역제를 위한 다자·양자 외교적 노력 강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 : 콩, 옥수수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고, 북미와 수확시기가 계절적 보완관계 단점 : 생산·유통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작목 : 콩, 옥수수 유통형 기업 중심으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진출 종합상사 및 해운사의 투자 확대 유도

	지역별 특성	진출 전략
북 미 미국,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 세계 최고의 곡물 생산. 유통. 수출 인프라 구축 ○ 단점 : 곡물메이저의 시장 장악으로 신규 진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밀, 콩, 옥수수 ○ 곡물메이저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하여 시장 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모델로 확산

3. 단계별 진출 전략

아래 【표 12】 에서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을 농장개발과 유통망 구축으로 각각 나누어 3단계의 진출 전략을 세운 후, 해외농업개발의 단계별 진출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표 12】 단계별 진출계획

구 분	1단계 〈교두보 확보〉	2단계 〈확산 및 규모화〉	3단계 〈경쟁력 확보〉
농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관심 확산 ○ 해외농지 확보 및 개량 ○ 시험재배 등을 통한 적정작목 선정 및 재배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확보 면적 확대 ○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산지유통과의 연계 ○ 전후방 연관산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생산 및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 ○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유통망과 연계 기반 마련
유통망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메이저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미국 유통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강변 엘리베이터 확보 등 사업영역 확대 ○ 브라질 등으로 곡물 유통망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1) 농장개발의 단계적 진출 전략

농업 유망지역의 면적을 확보한 후 인근지역으로 확장하고 규모화를 통해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1단계로 기개간된 농지 확보 도는 현지농장을 인수하거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진출 후 시험재배 단계를 거쳐 본격 생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2단계로는 운영중인 농장인근의 미개간지 개발을 통한 면적 확대 등으로 규모화를 추진하고, 농기계·농자재·저장 및 가공산업 등에 진출한다. 마지막 3단계로 생산이외에 계약재배, 수매 등으로 규모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현지 유통망

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유통망구축의 단계적 진출 전략

수출·강변·산지엘리베이터 등 곡물 유통망을 확보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다. 1단계로 곡물유통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메이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분참여를 통해 수출 엘리베이터를 확보한다. 2단계로 산지곡물 확보를 위하여 산지 엘리베이터 구축 또는 생산자 단체와 제휴하는 등 다각화를 추진하다. 3단계로 곡물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를 추진한다.

제2절 해외 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 방안

1.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곡물의 국내반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곡물 매입비 등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TRQ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해운사·종합상사 등의 곡물유통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현지 유통비용 절감 및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의 시설 이용 및 사업 제휴 등의 파트너십 강화도 고려해볼만 하다.

2.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유도와 품질 향상 지원

국내의 식품·사료업체 등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농업개발 기업과의 상호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 기업이 생산한 곡물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적합한 종자개발 및 보급, 수확 후 관리 기법 등 다양한 유통, 식품가공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3. 비상시 해외곡물 국내 반입 관련 매뉴얼 마련

식량자급률은 무엇보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상 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농작물을 적시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곡물수급 비상 상황시의 해외곡물의 국내 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다 원활하게 해외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곡물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재고상황과 주요 수출국의 품목별 수출량, 곡물 수출국가의 주요 수출항·수출경로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진출 국가의 곡물수출규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농산물 유통활동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평상시 해외곡물 국내반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해외 진출한 기업이 확보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확보된 농산물의 대다수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는 이해하더라도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 지원을 통해 확보된 곡물 중 일정부분¹⁴⁾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유도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확보된 곡물의 국내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현지 유통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확보한 곡물을 들여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연해주나 동남아의 경우 농지확보에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곡물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지에 유통에 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곡물의 국내 반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측면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곡물의

14)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반입량에 대한 어떤 제재 조건도 없지만, 향후 확보한 곡물 중 최소한 10-20% 가량은 국내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유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반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해외농업개발이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식량자급에 관한 국가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1.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1) 다양한 정부 지원 추진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추진하여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 자금지원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식량안보 관련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곡물 확보에 중점을 두되, 바이오에너지 작물, 조사료, 사탕수수, 커피, 유지작물 등 국내 식품원료로 공급되는 작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융자지원과 함께 농식품모태펀드¹⁵⁾,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다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투자 촉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에 대한 농식품모태펀드에 투자하며, 해외농업개발 투자 로드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반입실적 등 해외농업개발 성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무담보 등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5) 농식품모태펀드(MIFAFF Fund of Funds)는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Fund of Funds 방식의 농업금융시스템이다.

(2) 연관산업의 동반진출 강화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연계 진출하는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재배와 농자재·가공·유통 등과의 계열화를 통한 가치 사슬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해외투자여건 조사 등 현지 조사와 해외농업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2. 전문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1)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강화

대규모 조방형 농업, 국제 곡물유통, 해외진출 전략, 경영 및 재무관리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 업체 종사자 또는 진출 예정자 등의 실무교육 및 재교육 등을 위해 3~6개월 과정의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전문 대학원 개설을 유도하며 필요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전문분야 교육 이수 기회 또한 부여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젊은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과대학에 해외농업개발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해외농업 관련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에 대해 해외농업개발 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험 비용과 현지 체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후, 해외농업개발 기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어야 한다. 해외농업과 관련된 교육비 등은 정부, 관련 기업, 대학 등이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과 컨설팅 지원 확대

영농기술, 법률, 경영, 자금운용 등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 전문인력과 해외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여러 전문과들을 초빙하여 국내 관련 업계·학계와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진출한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수집하여, 사

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3. 민·관 협력 진출

(1) 농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대화 채널 마련

정부는 해외농업진출 국가와의 농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11월 21일 한-필리핀 농업장관간 '농산업복합단지(MIC)에 관한 MOU¹⁶⁾를 체결하였다. 기업의 토지확보문제, 사업진출 시 행정절차의 이행과 각종 애로사항의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도를 완화하고,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출 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ODA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

유무상 ODA¹⁷⁾(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자연스런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원활한 해외 농업개발 정착 지원 및 진출국가와의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해외농업진출 대상 국가에 ODA를 지원해줌으로써, 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농업에 활용될 사회기반시설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국 진출기업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별 협력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농촌진흥청의 지원 활성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의 해외농업 진출 업체에 대한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의 설치를 확대¹⁸⁾하여 기

16) 한-필리핀 MOU 체결에 있어 양국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MIC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양국 농업부, 필리핀 토지개혁부, 환경자원부, 투자청,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였다.

17)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으로 무상증여(Grant)나 유상지원 형태인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 두 가지 방식이 있음.

18)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설치국가는 2009년 6개국에서

업의 해외농업 진출 시 현지에 적합한 재배작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재배기법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농업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해외농업 진출기업이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약재배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가 감자생산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주)오리온 베트남 현지법인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는 소득이 향상되었고, 기업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상호발전 효과가 발생하였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목 적 : 개도국 현지에서『맞춤형 기술공여와 동시에 자원공동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 기업지원』등 호혜적 협력
- 조 직 : 센터소장(상주), 연구보조원 10여명(상주), 단기 전문가(수시파견)
- 인프라 : 사무실, 시험포장 및 현지 인력 등은 대상국에서 무상 제공
- ※ 사업예산 : '12년 73억(15개 센터 운영, 센터별 평균 5억원)

【표 13】 KOPIA 설치국 및 주요사업 현황

설치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남미(4개국)
'09	베트남 (채소, 카사바) 미얀마 (두류) 우즈베크 (채소, 사료작물)	케냐 (씨감자, 축산)	브라질 (버섯, 딸기) 파라과이 (채소, 감자)
'10	필리핀 (벼) 캄보디아 (옥수수)	DR콩고 (벼, 카사바) 알제리 (씨감자, 맥류)	
'11	태국 (조직배양) 스리랑카 (두류, 채소)	에티오피아 (축산, 채소)	볼리비아 (감자) 에콰도르 (시설채소)

【표 14】 주요 성과

- (베트남) 현지 적응 채소생산 기술 지원 및 확산 사업
 - 열대 기후대에 적합한 고온기 차광망 및 비가림 재배기술 지원, 토마토 호르몬제 처리로 착과율 향상(수량 70% 증수)
 - 국내 우수 품종(고추, 단호박 등)의 열대 적응성을 검정하여 소개
 - ☞ 베트남의 안정적인 채소 생산 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

2010년 10개국, 2011년 15개국으로 증가하였음.

□ (알제리) 씨감자 생산 기술 지원

- 무병 씨감자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으로 주식 안정 생산에 기여
 - * KOICA는 인프라 지원, 농진청은 Virus Free 씨감자 생산 기술 지속지원
 - ☞ 씨감자 전량(8만톤/년)을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문제점 해결

□ (케냐) 벼 농사 기술 지원

- 못줄 이용 모내기 및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무동력 탈곡기를 개발 보급하여 그동안의 원시적인 벼 농사 기술을 개선
 - ☞ 쌀 생산량 20% 증대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

□ (진출기업지원) (주) 오리온 베트남 현지법인 기술 지원

- 연중 감자 생산을 위한 적지 선정 및 병충해 방제 등 기술 지원
 - * 오리온 시장규모 : 1,000억원(초코파이 500, 포테이토칩 100, 기타 400)
 - ☞ 현지 포테이토칩 생산 원료인 감자의 안정 생산 가능
-

제4절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의 내실화

1. 해외농업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1) 국가별·지역별 환경조사 확대

국가·지역별 농업자원에 관한 조사 및 투자환경에 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 총 22개국을 조사하였으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국가 정보의 업데이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별 농업자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가별 농업정책 및 제도와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출전략, 먼저 진출한 기업의 사업 확장 전략 마련을 위한 맞춤형 투자환경조사에 관한 지원¹⁹⁾도 확대해야 한다. 개도국의 농업관련 자료 확보하여 지원해주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 등 정부차원의 채널을 통한 자료 확보²⁰⁾에도 주력해야 한다.

19) 2009~2011년 기간 중 총 13개국 21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20) 농림수산물부의 경우 농업협력위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외교통상부는 주재국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채널을 통해 자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2)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강화

해외농업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개발협회로 연차적으로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농업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 시스템(www.oads.or.kr)”을 운영하고 있긴 하나,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직이나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농업개발협회 내부에 별도의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1) 각 기관별 공조체제 강화

2012년 1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향후 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녹색사업단 등이지만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 기관 간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부처 간 원활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일원화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5】 기관별 해외농업개발과 관련·유사 사업

기 관	시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용자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조달시스템(그레인컴퍼니)
산림청	해외산림개발사업(해외조림용자사업)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설립·운영

또한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조 하에 ODA 지원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공관 및 KOTRA는 기업에게 진출국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인해 기업이 해외농업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해외농업개발협회 운영의 활성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실시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해외농업개발협회가 나서서 투자타당성을 조사하고 각종 교육훈련과 정보수집을 담당하며,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안내와 더불어 해외농업관련 연구활동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외진출 시 권역별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진출이 활발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5절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1.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원 확대

자칫 선진국의 약탈로도 보일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의존성이 높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여 해외농업개발 진출국과 win-win 하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최근 “아세안+3²¹⁾ 농림장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곡물가 급등에 대비해 비상 쌀 비축제도 등 아시아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 제도(APTERR)는 재난 발생 회원국에게 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쌀을 미리 비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78만 7000톤의 비축

21) 아세안+3(ASEAN+3)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3개 국가(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를 포함한 협동 포럼이다

량 중 우리나라는 15만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식량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FAO²²⁾,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공유하고 식량안보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FAO가 주관하는 농산물 시장 정보 시스템과 APEC의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식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포럼²³⁾, APEC 비상식량 대응 메커니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곡물수축국의 수출제한조치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G20, APEC, UN 등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축국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외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2)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고 토지 및 품종 개량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23) 신속대응포럼(RRF:Rapid Response Forum)은 식량위기 시 관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임.

제5장 결 론

최근 몇 차례의 곡물파동을 겪으면서 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식량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곡물수급불안에 따른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곡물자급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어서 식량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 확보에 대한 투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일상화와 곡물연료의 소비증가 등으로 인한 상시적 곡물수급의 불안정이 전망됨에 따라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해외농업개발 추진 3년차를 맞은 현재, 진출기업 수가 상당수 증가하고 해외농업 개발면적이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해외농업 진출 기업과 그 투자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곡물의 국내반입문제와 해외농업개발의 지역별·분야별 편중, 해외농업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의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식량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첫째,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고 각 지역별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여 그에 따른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그로인해 보다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둘째,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해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비상시 해외곡물의 국내 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함과 동시에 평상 시 해외곡물의 국내 반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고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그 연관 산업 기업에 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재배와 가공·유통과의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함께 분야별 전문 인력의 육성을 강화하고,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에 적합한 재배작목의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재배 기법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방안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별·지역별 환경조사를 확대하여 해외농업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외농업관련 연구 활동과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식량안보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식량안보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FAO,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농업개발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외농업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해외농업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현지해외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②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해외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 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4. 해외농업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명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제9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

제1절 통칙

제11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존립기간)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주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주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② 주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

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산물의 개발·생산·저장·가공·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금차입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용자금액을 제19

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2조(자금차입 등) ①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다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23조(보조) 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단체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하여 해외농업

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해외농업개발협회)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신고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제농업협력사업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주무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해외농업자원 조사 등)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제공
4. 해외 농업시장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32조(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국내·국외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용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고 및 검사) ① 주무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84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구 분		기본계획('09~'18)	종합계획('12~'21)
계획 수립 개요	법적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5조
	배경	○'08년 애그플레이션,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정으로 장기 가격 변동 대응 필요	○곡물가격 변동주기 단축,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식량 수급 불균형에 대비
	목표	○'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 국내소비량의 10% 확보	○'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
추진 전략	유형	○상업형 : 민간 주도, 농장 개발 및 유통거점 확보 ○공익형 : 농업협력과 민간 진출 병행	○조기 성과제고를 위한 유통 사업 지원 강화, 농장 개발과 유통 사업 연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농장개발, 유통 사업 조합 모색
	지역	○일반적 개발 여건과 접근방식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 * 중앙아, 동북아, 동남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생산·수출 잠재력, 국내 수입 및 접근성, 기업 진출 상황 등을 판단하여 5개 권역* 14개국 선정 * 동북아, 동남아, 동유럽, 남미, 북미
	품목	○주요 수입곡물(밀, 콩, 옥수수) 및 바이오연료 작물(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곡물확보에 중점, 바이오연료 작물, 조사료, 국내 식품원료(사탕수수, 커피, 유지작물 등)로 확대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협력단(단장: 1차관)',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운영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해외농업개발심의회(위원장: 1차관)' 설치 ○관계부처·기관 간 공조 강화
	투자 자원	○해외농업개발 용자 실시('09~)	○기존 용자 및 수출입은행 자금, 농식품 모태펀드 활용으로 재원 다각화 ○용자조건 개선 및 세제 혜택 추진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인턴 사업 추진 ○맞춤형 해외농업 기술 개발 및 지원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정보 수집 강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민간 정보제공 확대 ○ODA 연계, EDCF 비중 점진적 확대	○조방농업, 곡물유통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육성 강화 ○KOPIA 설치 확대 및 기업 지원 ○협회의 정보 수집·관리, 투자 환경조사 지원 확대 ○민·관 협력진출 모델 확산
	국제 공조	-	○FAO APEC 등 국제기구와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1) 추진배경

- 곡물 약 1,400만톤을 국제시장에서 조달 (자급률 26.7%, OECD 33국 중 28위)
 - 산업화 등에 따라 경지면적은 축소되며 ('70 : 230만ha → '08: 180) 이용률 또한 감소하여 ('70 : 142% → '08 : 103) 곡물 자급률 향상에 한계
 - *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715만ha 경지면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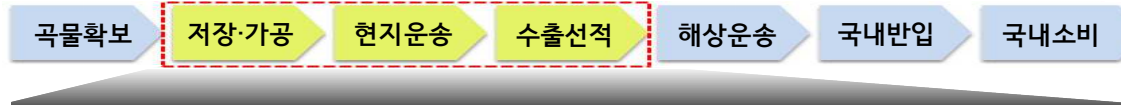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로 곡물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대 등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증대 전망
 - 국제 곡물수급불안 가중에 따른 원료곡물 확보에 애로
 - * 세계 곡물재고율 : ('80년) 20% → ('90) 25 → ('00) 26 → ('08) 18
 - *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추세 : ('00)7천만배럴 → ('02)123 → ('05)207 → ('08) 495
 - 국제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증대
 - * '08년 쌀, 콩, 밀,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2배 이상 급등
 - * 국내 밀가루가격 52% 인상('07.1~'08.7), 농협사료가격 63% 인상('06.11~'08.7)

- 국제곡물시장은 메이저가 유통단계를 점유하여 80~90%를 지배, 우리나라는 수입곡물의 60~70%를 메이저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 국내 실수요업체 등 민간 기업은 곡물사업 초기진입의 위험부담과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견제를 우려하여 사업 진입 기피
 - *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곡물조달 체계를 확립(젠노, 미쓰이 등)

- ➡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및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하여 물가상승과 국민 먹거리 부족 등 불안요소가 상존함으로 식량안보체계 구축이 시급

(2) 주요사업내용

- 주요 곡물수출국의 곡물유통망 확보를 통하여 산지에서 국내까지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 구축



매입(저장) 시설	현지내륙운송시설		수출선적시설
산지(Country) Elevator	철도운송(Terminal) Elevator	강변(River) Elevator	수출(Export) Elevator
			

- 엘리베이터는 벌크 형태로 대량 거래되는 곡물의 저장과 수송 등을 관리하는 곡물유통시설을 총칭하며 곡물사업 Value Chain의 중심임

- * 산지 엘리베이터 : 생산지에 위치하며 농가로부터 곡물매집 및 저장
- * 강변 엘리베이터 : 강변에 위치하며 산지와 수출항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시설
- * 터미널 엘리베이터 : 철도를 이용하여 산지와 수출항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시설
- * 수출 엘리베이터 : 강변.터미널로부터 운송된 곡물을 벌크선에 선적 및 판매

- 연간 곡물수요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를 대상
 - 콩은 두부, 식용유, 장류 등의 주원료로 쓰여 서민 식생활과 연관이 깊은 품목
 - 옥수수는 연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곡물로 사료 및 식품의 주원료
 - 밀은 밀가루 및 사료 제조에 주로 쓰이며, 라면 등 서민 기초식품에 영향이 큼
- 민간과 공동 진출로 글로벌 곡물조달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재정투자 최소화 및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 선진곡물시장인 미국에 우선 진출하여 곡물 유통망 운영.선물거래 등 역량을 확보하며 브라질, 연해주, 우크라이나 등 기타 국가 연계 진출로 수입선을 다변화

(3) 사업운영체계

구 매	저 장	운 송	판 매
	산지엘리베이터	강변엘리베이터 수출엘리베이터	국내수입 ○국내 실 수입요업체 (제품 생산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요 물량을 공급
개발농장 생산물 ○유통형과 연계하여 민간 기업이 개발한 해외 농장 생산물을 우선 구매추진 → 확보한 해외식량기 지 활성화 유도	곡물저장운영 ○각 국가별 확보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구매한 물량을 적기에 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함	현지내륙운송 ○확보한 물량의 적기 공급계획 수립 - 내륙운송루트파악 - 내륙운송수단확보	현지소비 ○현지에서 확보한 곡물 중 일부는 현지 소비 추진
현지농장 생산물 ○현지농민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물량 확보 → 안정적 물량확보로 식량안보체계강화	농장지원강화 ○민간 개발농장의 현지 적응력 극대화 ○계약재배 농민과의 질 높은 유대관계로 필요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해상운송 ○해상운송비는 가장 큰 비중 차지 ○적기·적량의 국내 도입계획 수립 - 적정규모 선박확보 - 경쟁력 있는 운임	제3국 판매 ○주요 곡물 수입국 중심으로 주변국에 수출

- ❖ 국내반입 : 최소이윤을 가산하여 국내 제품생산업체에 공급
- ❖ 현지소비 : 현지 수요처에 공급하여 일정한 수익률 확보
- ❖ 제3국 수출 : 주변국 등으로 해외조직망을 활용하여 수출
- ➡ 확보물량의 국내반입, 현지판매, 제3국 수출 등 다각화로 사업안정 추구

2.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산림투자지원)

(1) 목적

- 장기·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 임업인, 목재 다수요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2) 지원규모

가. 사업량 : 12,500ha

나. 용자단비 :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적용

다. 금액 : 10,000백만원

※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산림청장

나. 지원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용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1월, 6월에 사업 안내를 공고하여 사업신청을 받으며 잔액이 발생 시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함
- 선정기준
 -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 ① 해외산림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 ② 계약 조건
 - ③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④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⑤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지침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① 신청인의 신용상태

②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기타 선정기준

① 해외산림개발사업계획 신고 수리된 사업자 중 조림, 육림, 가공시설사업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② 해외산림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용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③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지원

④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가공시설 및 조림지 매수비는 하반기에 지원

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의거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개발자 우선 지원

⑥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⑦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⑧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⑨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⑩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용자신청/접수 → 용자심의회 심사 → 용자지원액 결정 통보 → 대출취급기관에 용자 신청/대출

(4) 용자요령

가. 용자조건

- 지원 대상사업 구분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70~100%를 지원 함. 다만, 사업자별 용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용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용자심의회에서 결정

사업명구분		금리	지원율(%)		용자한도	용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용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배출권조 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 에너지조림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20억 이내	2/3	
해외조림지 매수		1.5%			20억 이내	10/3	

- 주1) 육림사업 용자기간은 당초 용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용자기간 이내로 적용
- 주2)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주3) 해외조림지 매수 :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토지
- 주4) 용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 포함

○ 해외산림투자 지원 사업비용 구분

-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 ① 매수 및 지원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조림대상 토지 구입비용
- ② 지원방법 : 토지매매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 ③ 지원제한 : 신규조림 토지 매수 지원대상자는 융자금 수령 후 3년 이내 조림을 시작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간 내 조림 미 실시될 경우에는 지원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 조치

o 담보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o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 구비서류

- ① 해외산림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⑤ 관련계약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⑦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o 융자사업자 의무

- 개발자원의 반입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 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14조)
- 융자금 집행 : 정책자금을 수령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융자신청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종료일 전까지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실적제출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반기별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사업별 지원계획

가. 분기별 용자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반기별	주요사업추진계획	소 요 자 금		
		계	보 조	용 자
계		10,000,000	-	10,000,000
상반기	해외산림투자지원	7,000,000	-	7,000,000
하반기	해외산림투자지원	3,000,000	-	3,000,000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청 : 조림실적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 용자금 사후관리

나. 사후관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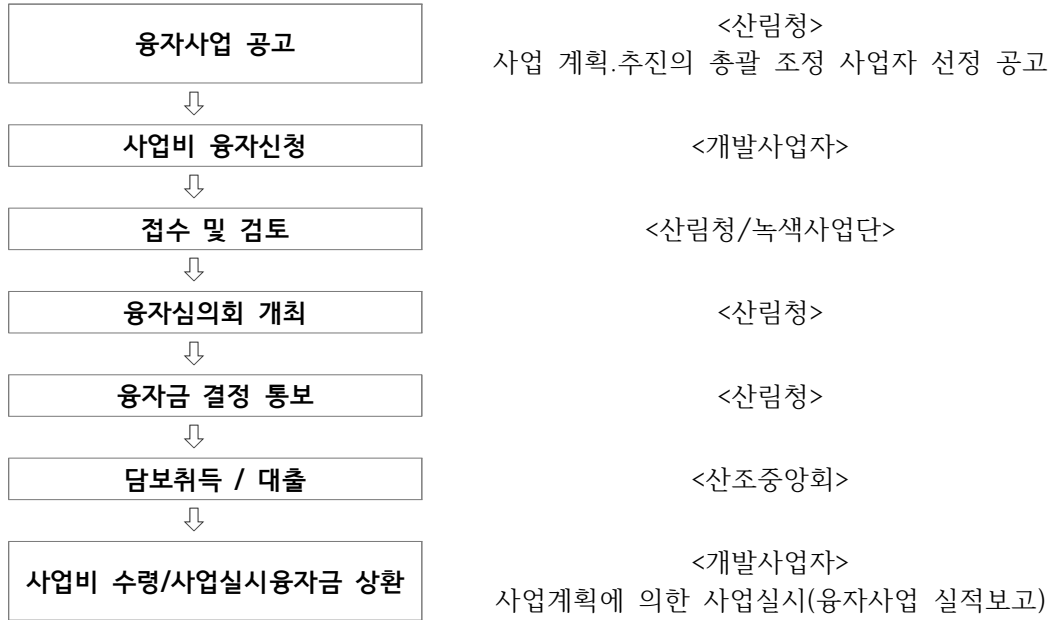
- 사업추진실적보고에 의한 사업비 적정집행 확인과 조림지 현지점검

(7)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방침

- 장기 안정적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비 적기.확대 지원으로 사업자 부담완화 추진

나. 사업추진 체계도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해외산림개발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전년 12월까지)
- 사업대상자, 용자 규모, 용자 조건,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신청 공고

녹색사업단

- 산림청의 사업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와 검토

사업(신청)자

- 산림청에서 공고한 사업신청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녹색사업단에 당해년도 사업비 신청
- <구비서류>
- ① 해외산림개발자금 용자(대출)신청서
 - ②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③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⑤ 관련계약서
-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⑦ 대출담보제공 물건 목록
-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녹색사업단 보고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용자심의회 개최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

- 용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산림청

-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사업단 및 대출업무 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산림청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산림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

- 용자 신청에 대하여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대출금 지급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산림청에 보고

사업(신청)자

- 산림조합중앙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제공
- 사업자는 용자목적에 적합하게 자금을 집행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제공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산림청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완료이후 용자금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용자금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매반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산림청에 제출
- 사업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협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중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용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제도, 용자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를 연도 말에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나. 환 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성 제고
- 산림청은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8)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농촌진흥청의 개도국 농업기술 협력사업

(1) 추진배경

-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개발원조위원회, '09.11, 24번째)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요구 <원조 받던 나라 → 주는 나라로 전환>
- 개도국 인구의 약 70% 이상, 빈곤 인구의 9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함에 따른 농업 기술 지원.협력의 중요성 부각
 - * 작물 수확량 10% 증가 → 절대빈곤 인구 6~10% 감소 (OECD)
- 쌀 부족 해결 경험 개도국 제공 및 세계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

참할 것을 강조('09. G8정상회의, '10. FAO 아·태총회)

○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

□ 그동안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원조에 따른 수원국의 의타심 및 공여국의 원조 피로감 가중으로 새로운 협력방식 요구

* 단순 원조에서 '개발효과'로의 원조 패러다임 전환('11, 부산선언)

국정현안 / 대통령 의지 표명

○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 개발경험 전수.ODA 확대 천명('09)

○ 세계 농업식량안보기금 출범('10) : 한국 5천만불 지원 추진

○ 개도국 빈곤탈출 지원, 개발경험 전수교육 확대, 글로벌 리더 2만명 양성 ('11년 대통령 신년 특별 연설)

⇒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개도국 농업발전을 돕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도입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협력 시스템을 구축

(2)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운영

□ 일시적·단편적 지원을 탈피하고『현지에 센터 설치, 전문가 상주 등 지속적 공동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KOPIA를 설치·운영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목 적 : 개도국 현지에서『맞춤형 기술공여와 동시에 자원공동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 기업지원』등 호혜적 협력

○ 조 직 : 센터소장(상주), 연구보조원 10여명(상주), 단기 전문가(수시파견)

○ 인프라 : 사무실, 시험포장 및 현지 인력 등은 대상국에서 무상 제공

* 사업예산 : '12년 73억(15개 센터 운영, 센터별 평균 5억원)

○ KOPIA 설치 : ('09) 6개국 → ('10) 10 → ('11, '12) 15 → ('13) 20

○ 농진청의 개도국 인적 네트워크가 사업의 중추적 기반이 됨

* 농진청을 다녀간 개도국 훈련생 약 4천명이 각국에서 주요 보직에 근무

□ 현지 연구원과 공동으로 책임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KOPIA의 신뢰성 제고 및 조기성과 달성을 유도

○ KOPIA 설치국 및 주요사업 현황

설 치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남미(4개국)
'09	베트남 (채소, 카사바) 미얀마 (두류) 우즈벡 (채소, 사료작물)	케냐 (씨감자, 축산)	브라질 (버섯, 딸기) 파라과이 (채소, 감자)
'10	필리핀 (벼) 캄보디아 (옥수수)	DR콩고 (벼, 카사바) 알제리 (씨감자, 맥류)	
'11	태국 (조식배양) 스리랑카 (두류, 채소)	에티오피아 (축산, 채소)	볼리비아 (감자) 에콰도르 (시설채소)

※ 주요성과

- 국가별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지원 ⇒ 국격 제고
 - (우즈벡) 시설 딸기 재배기술 시연 : 관련 연구자 및 지도자 대상 10회 실시
 - (볼리비아) 감자 재배기술 전수 : 절단종서 파종 방법 등(생산성 4배 향상)
 - (필리핀) 벼 현지 적응 품종 선발. 농가시범 : 한아름, 다산 등 3품종
- 국내 농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원-원 협력
 - (자원도입) 약용버섯, 영년생 콩 등 유용자원 1,310점
 - ☞ 농진청의 육성품종(2,690종) 중 67%가 외국 도입자원을 활용한 품종임
 - (진출기업지원) 베트남 (주)오리온 등 12개 업체 현장 지원
 - (한식홍보) '한-베트남 음식 문화축제', 파라과이 '한식축제' 등
 - ⇒ 우수 국내종자 및 농자재 등의 수출도 측면에서 지원
- 해외농업진출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 미래 대비
 - 농식품 전공 대학생 파견(6개월) : ('09~'11) 367명 → ('12) 215
 - * '09~'10 파견 종료 후 취업 대상자 중 68%취업

파 급 효 과

- 기존 원조방식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 협력 모델로 부각
- 우리나라 자원의교를 뒷받침하는 선제적 진출 사업으로 역할을 담당
- 유관부처 ODA사업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행안부의 새마을 센터 등)
- KOPIA설치 추가 요청(20개국),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및 국제축산연구소(ILRI) 등 국제기구의 농진청 사업 참여('11, MOU) 등
 -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국가브랜드위 과제채택, 정책홍보 대통령상 등

(3)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 농진청 주도『권역별 농업기술 공동 번영 협력 시스템』 구축현황

농촌진흥청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

- 목적 :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기술 격차 해소 ⇒ 농업기술 리더국가 실현
- 현황 : ('09~'11) 아시아, 아프리카 협의체 구축.운영 → ('14) 중남미로 확대
 -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운영 : 11국 참여
 -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운영 : 18국 참여
 - * 「한-라틴아메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14, 10국 참여(구축 예정)
- ☞ 농진청 주도, 국제기구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 중 (농진청 내 사무국 운영)



⇒ 국정현안(글로벌 리더십 및 성숙한 세계국가 지향)의 구체적 실천 사례임

- (사 업) 지구온난화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농업 환경.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및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

-
- ✓ 식량안보 확보 및 농식품 기술 개발 협력
 -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협력
 -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기술이전 사업 추진
 - ※ 사무국 운영 : 총회, 사업기획, 국제회의, 뉴스레터, 다자간 사업운영, 평가 등
-

주요 사례

- 국가별 기술개발 성과 영농교본 제작, 관련기관 배부농가보급 및 지원
 - 영농교본 제작 및 배포 (10국 19종 약 33,000부)
 - 문자없는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에 한글표기 영농교본 제작 지원
- 아시아 지역 이동성 병해충 방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AFACI 회원국이 공동으로 이동성 병해충 발생 대비 사전 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벼멸구 이동경로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여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조기예찰 경보체계 구축.운영
 - * 국내 이동성 병해충 피해액 : 약 70억 → 과제를 통해 20-30% 감강 예상
 - 주요 추진 내용
 - * 이동성 병해충 공식 웹사이트(<http://www.amivs.org/>) 개설('10. 7월)
 - * 국가간 벼병해충 발생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11. 4월)
-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기술개발 및 지원
 - 토마토 시설재배기술 정착(몽골), 내재해성 콩 품종육성(인니), 옥수수 종자생산 단지 조성(태국)
- AFACI 웹사이트 구축으로 회원국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

			
영농교본 제작	전문가 워크숍(베트남)	재배기술 현장지도	신규과제기획회의

주요 사례

- 국가별 지원 사업 : 자국에 필요한 기술을 한국에서 장기연수를 통해 습득한 후 자국에 돌아가 그 경험을 재현토록 하는 방식 채택
 - 아프리카 15개국 43명이 국내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진청 연구소에서 각국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농진청 전문가와 1대 1로 추진한 후 국가별로 자국이 추진할 과제를 스스로 도출토록 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 확정. 추진
 - * 아프리카형 사업 추진 절차 : 초청직무연수 → 국가별 과제도출.선정.추진
- 다자간 지원 사업 : 아프리카 공통의 문제인 주식에 대한 생산성 증대 및 가축개량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같이 협력하여 그 해결책을 함께 찾는 방식 채택
 - 인공수정.수정란 이식 등 가축 개량 기술 전파(2회, 에티오피아)
 - * 농진청이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공동으로, KAFACI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지(에티오피아)에서 실습 위주의 기술을 전수를 추진함
 - * 국제축산 연구소(ILRI)와 공동사업 MOU체결 ('11. 3월)
 - 아프리카 19개국에 우리나라의 녹색혁명 경험 전수('11, 케냐)
 - * KAFACI 및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 회원국 등 19개국 68명이 참여하여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공동노력의 장을 마련함, 한국의 식량자급 달성 경험을 현지에서 전수하여 회원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와 공동사업 MOU체결 ('11. 3월)

			
장기 초청 훈련(3개월)	현지 녹색혁명 경험 전수 ('11)	집행이사회('12. 5)	가축 개량 기술지원('12)

농진청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 현황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15개국 [~11]
- 한-아프리카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18개국
- 국외상주연구원: 11명 [~11]
- 아시아 기술협력 협의체(AFACI): 11개국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국(15개국)
 - *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우즈벡,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케냐, DR 콩고, 알제리, 에티오피아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회원국(11개국)
 - *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회원국(18개국)
 - * 한국,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
-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기관(11개 기관)
 - * 국제미작연구소, 국제옥수수·밀 연구소,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국제감자연구소,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 국제축산연구소, 중국농업과학원, 미국농업연구청, 브라질농업연구청, 네덜란드와게닝헨대학연구소, 일본농식품총합연구기구
- 농진청 해외연수생 연합체 결성국(7개국)
 -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 본 정책자료집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담당 기관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